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도시건설위원회(도시관리국)

의안번호	제305호
제 출 자	이관우 의원 외 9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이선하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개정(2022.8.4. 시행)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1호)
-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2호)
- 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유치원, 학교가 있는 경우(안 제7조의2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 건축과

라. 입법예고 : 2024. 05. 17. ~ 2024. 05. 22(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개 요

-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08.04. 개정·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¹⁾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